

길씨네 가래떡볶이

## 『길씨네 가래떡볶이』 정보공개서

『길씨네 가래떡볶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

### 길씨네 가래떡볶이

####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6005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6.01.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01.12.

####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본부 회사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12번길 8-45 (대화동, 1층 일부호)		
전화번호	070-4319-0019	팩스번호	-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자 전화번호	 (비공개)
홈페이지	-	담당자 이메일	gilgafood@daum.net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직영점을 시작한 날
2. 『길씨네 가래떡볶이』 연혁
3. 『길씨네 가래떡볶이』 업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최근 3년간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 수
6. 『길씨네 가래떡볶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입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길씨네 가래떡볶이	길씨네 가래떡볶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12번길 8-45 (대화동, 1층 일부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1.05.01	서 지원	070-4319-0019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832-26-01158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서 지원	길씨네 가래떡볶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12번길 8-45 (대화동, 1층 일부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 지원	070-4319-0019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길씨네 가래떡볶이』이라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길씨네 가래떡볶이	

상 호	길씨네 가래떡볶이 OO점	
상 표(서비스표)	 길씨네 가래떡볶이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2206827호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53,262		
2023				71,638		
2024				74,668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서 지원	대표	2021.5.~ 현재	길씨네 가래떡볶이 대표	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하기의 사용기간 동안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서비스표)	가맹점 영업활동	2022.12.07. 출원 2024.06.11. 등록	출원 제 40-2022-0225355호 등록 제 40-2206827호	이우진	2034.06.11. (2034.06.1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 현황

1.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1년 05월01일)

2. 『길씨네 가래떡볶이』 연혁

☞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길씨네 가래떡볶이	길씨네 가래떡볶이	서 지원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12번 길 8-45 (대화동, 1층 일부호)

3. 『길씨네 가래떡볶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길씨네 가래떡볶이	대분류 분식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1	0	1	1	0	1
서울	0	-	-	0	-	-	0	-	-
부산	0	-	-	0	-	-	0	-	-
대구	0	-	-	0	-	-	0	-	-
인천	0	-	-	0	-	-	0	-	-
광주	0	-	-	0	-	-	0	-	-
대전	0	-	-	0	-	-	0	-	-
울산	0	-	-	0	-	-	0	-	-
세종	0	-	-	0	-	-	0	-	-
경기	1	-	1	1	-	1	1	-	1
강원	0	-	-	0	-	-	0	-	-
충북	0	-	-	0	-	-	0	-	-

충남	0	-	-	0	-	-	0	-	-
전북	0	-	-	0	-	-	0	-	-
전남	0	-	-	0	-	-	0	-	-
경북	0	-	-	0	-	-	0	-	-
경남	0	-	-	0	-	-	0	-	-
제주	0	-	-	0	-	-	0	-	-

### 5. 최근 3년간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023						
2024						

### 6. 『길씨네 가래떡볶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 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 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 전국 가맹점 운영이 6개월 미만이므로 연평균 매출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의 매장내의 포스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평균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길씨네 가래떡볶이】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 【길씨네 가래떡볶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	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2024년에 『길씨네 가래떡볶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광고판촉비	2024년	-	-	-	손익계산서 참조

※ 위 금액에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주)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031-918-6721

2) 가맹금 예치절차

☞ 귀하는 [신한은행]의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 증설공사, 소방, 도시가스공사,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

☞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5,500				
가맹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 이전 또는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2) 계약이행보증금

☞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b>총 계</b>	<b>2,000</b>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미지급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귀하는 아래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이 당사에 직접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b>합 계</b>	<b>7,500</b>	-
가맹비	3,300	부가세 포함
개점 전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 4) 기타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3.3m <sup>2</sup> )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b>총 계</b>	-	<b>45,150</b>	<b>3,010</b>			<b>49.5m<sup>2</sup>(약 15평) 기준</b>
인테리어	미지정	27,000	1,800	개별 협의	공사전 계약취소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간판/사인물	미지정	2,750	183	개별 협의	공사전 계약취소	판타입 기준
설비 및 집기	미지정	11,000	733	계약일	주문전 계약취소	점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의탁자	미지정	1,100	-	계약일	주문전 계약취소	점포 상황, 의탁자 수량 및 사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초도물품 (필수공급품목)	미지정	2,200		물품공급 7일전	입고전 계약취소	오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개점행사비	미지정	1,1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시행전	면적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됨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관리 감독 준수 :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시설 관련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점포환경개선, 매장 이전시 점포시설 공사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디자인 제공비로 **3.3m<sup>2</sup>당 33만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수 7일 이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 신고, 철거, 냉난방기,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실외, 배관공사, 가스/소방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덕트배관, CCTV, 음향, 외부파사드, 화장실 공사,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세 이상일 것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와 판촉 부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정보공개서 V-9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열티 (상호,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22만원	익월 10일	반환 안됨	소멸성	매월 지급
POS 프로그램 사용료	협력업체	협의	협의	협의	사용료로 비용소요	매월 지급
기기장비, 의탁자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A/S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발생비용	교체/보수 업무 개시 전	교체/보수 전 계약취소	교체/보수 후 반환 불가	
광고·판촉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광고/판촉 미실시	광고/판촉 후 반환 불가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가 요구시 : VII.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기준: 2024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매장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당사는 가맹사업의 양도일 전일까지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 귀하가 운영하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영업 양도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비의 지급은 해당 양수·양도가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5,5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2,000	없음
합 계	7,500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간판 또는 사인물의 일부를 가리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되고 전체를 제거하여야 함),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길씨네** 가래떡볶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원,부가세미포함)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2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하가 [길씨네 가래떡볶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계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계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가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	-	-	-	-	-
계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별첨]에 기재된 모든 제품을 판매해야 함이 원칙이며, 그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가맹본부 미 승인 제품 사용, 진열, 판매 시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및 물품공급 중단 3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4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신제품 출시,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레시피 변경 포함) 또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아래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및 물품공급 중단 3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4차 : 가맹계약 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이외의 유통채널 고객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참조		변경시 통보 (유무선,이메일등)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 및 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길씨네 가래떡볶이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지도상 날인한 영업지역 내에 [길씨네 가래떡볶이]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영업권 내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추가 개점하거나, 기존 가맹점을 폐점한 후 재출점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

특수상권인 경우	특수상권 내	
특수상권 아닌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b>일반적인 경우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b></p> <p>1. 경계선은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2.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이후 본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백화점, 시장, 학교, 푸드코트, 마트,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호텔, 상가, 오피스텔상가, 주상복합상가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을"의 영업지역과 무관하게 '갑'은 직영점 및 타 가맹점 개설이 가능하며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p> <p>3. 지역과 위치, 상권 등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귀하와 당사 가 합의하여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으며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하거나 점포소재지 중심으로 좌우와 상하 거리 등을 달리 정하여 설정(예 : 점포소재지 중심으로 좌측 300m, 우측 700m, 상측 400m, 하측 600m)할 수 있습니다.</p>	

가맹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설정 또는 상호 합의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문구 또는 지도로 별도 표시하여 설정

※ 귀하의 배달영업활동 지역은 당사와 귀하가 가맹계약서를 토대로 합의하여 설정한 영업지역과 동일하며 현실적으로 배달어플등의 문제 등으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배달영업지역이 겹치는 경우 부득이하게 가맹점사업자간의 자율경쟁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길씨네 가래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경영상황 변화등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몰	길가네 11번가	www.11st.co.kr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길가네 G마켓	www.gmarket.co.kr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길가네 그립	www.grip.show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길가네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gilgafood/products/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길가네 옥션	www.auction.co.kr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길가네 카카오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길가네 쿠팡	www.coupang.com	떡볶이 밀키트	온라인몰로 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매장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그를 검토하여 승인, 승인 불허,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고, 만약 가맹본부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 사업자

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87%	0%	13%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2%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 **2** ]년입니다. 단, 계약체결시(최초, 갱신 등 포함) 당사자의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일"은 최초 양도인의 최초 계약일을 말합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무단으로 불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로열티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로열티 금액을 축소하여 지급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본사의 승인 없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온라인상의 불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물품 등의 대금의 결제를 2회 연속 지연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상 규정된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감독,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설비 및 기기 등에 대한 점검으로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위생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가맹계약서상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가맹계약서상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상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팸플렛,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을 자체 제작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위탁 경영하게 한 경우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이 본사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교육 종료 후 30일 내에 본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정해진 기일 내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각종 비용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 제정·개정인 경우, 사전 통보 후 수정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우
○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수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li> <li>-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li> <li>-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li> </ul>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POS 매출 자료, 투자비 내역, 영업현황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귀하의 양수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li> <li>○ 당사 검토에 따른 승인</li> </ul>	가맹점사업자가 양도일의 2개월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승인 시 양도인 양수인간 양수도 계약 체결하며, 양수도계약 체결을 전제로 승인 후 15일 내 양수인과 가맹본부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본부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도양수를 할 경우, 당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양수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양도인의 최초가맹계약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 ※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양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당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불승인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양도가 무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 운영권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 행사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대리 경영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 위탁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위탁경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자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위탁 경영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길씨네 가래떡볶이**』와 동일한 업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input type="radio"/> 일반인에게 떡볶이 및 튀김을 판매하는 업종 <input type="radio"/>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문의 : 가맹본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길씨네 가래떡볶이**』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3일 전부터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1:00 ~ 22:00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 주 6일 이상, 월 26일 이상 개점원칙 -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연속 휴업 금지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가맹본부와 협의 가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1명(15평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부	본사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함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 30%	광고비 7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분담)	광고계획공고→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분담금통지서 발송	광고동의 절차를 거친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개별행사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행사계획공고→가맹점의 판촉참여여부 결정→분담금통지서 발송		
판촉행사	공동판촉	협의	협의 단,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드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분담금통지서 발송	판촉행사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그등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동의 시 전체적용
--	--	--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 부가세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가맹계약서상 계약 종료후의 조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당사에 위약벌로서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 부가세없음)**씩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 부가세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경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 부가세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 부가세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6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주변시세 파악, 건물등기, 토지대장등) - 입점 후보지 상권분석(주거형태 및 오피스, 유동인구, 동종업종 등)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44(1일)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임대차 계약 체결	D-35(1일)	
매장 실측/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시공 계약 체결	D-31~34(3일)	
지역홍보	- 지역판촉 행사 실시	D-1~20(20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5~30(25일)	
개점 준비	- 인테리어 공사 완료 - 주방 집기 및 초도물품 입고 - 가오픈	D-1~4(3일)	
개점	- 개점 행사 및 영업 개시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를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ul> <p><b>&lt;분할지급 시 절차&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고객, 입지, 업종) 조사 분석과 계획 - 점포상황의 점검 및 개선</li> <li>- 점포 설비 및 시스템 유지, 보수</li> <li>- 가맹본부 정책 이행 관련 가맹점 상황점검</li> </ul>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주, 직원의 불만사항 접수, 해결</li> <li>- 가맹점별 판매촉진 등 계획 수립</li> <li>- 계약의 변경, 갱신 해지 등 매장 변화에 따른 설명, 교섭 등</li> </ul>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을 설명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주방요리방법, 점포운영의 노하우,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	필수교육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본사정책 안내, 제품 품질관리 교육, 제품 평가회, 신메뉴 출시 등 가맹점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 및 필요한 의견수렴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후 필요시	필수교육
	특별교육				
	보수교육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길씨네 가래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b>최소 3일(1일 8시간)</b>	<b>2,200</b>	최초 계약시 이수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추후 공지	실비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특별교육	개별 산정	실비	
	보수교육	개별 산정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부담하며 그 비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 신규 교육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 및 귀하의 가맹점 근무자에 한하여, 개점 전에만 최대 2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신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상속, 증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점 전 신규교육을 설령 1인만 받았다 하더라도 개점 후에는 소멸하며, 신규교육 비용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 번	지 역	명 칭	소 재 지
1	경기	길씨네 가래떡볶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12번길 8-45 (대화동, 1층 일부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3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74,668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70-4319-001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가맹금 예치 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길씨네 가래떡볶이 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사업자번호: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 좌			
가맹본부의 계좌	계좌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포예정지역		브랜드명		
구분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3]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 길씨네 가래떡볶이

**일산대화점**  
 평일 18:30 - 23:50  
 주말 11:00 - 23:50  
 경기도 일산서구대화동  
 2120-2 1호  
 TEL. 031-971-8388

## 떡순모세트 17.9

길씨네 인기메뉴 **BEST**  
 가래떡볶이 + 순대(내장) + 모듬튀김  
 + 캔콜라 (도핑사베스계란비엔너, 튀김단두 등 먹기)



가래떡볶이

## 치킨세트 17.3

국내산100% 순살 닭다리살 **BEST**  
 가래떡볶이 + 순살치킨 (소스 3종 제공)  
 + 캔콜라



국내산100% 순살 닭다리살



오리지날 6.9

짜장 7.2

로제 & 2

## 말떡볶이



오리지날 7.5

짜장 7.5

로제 & 2

## 스페셜볶이



튀김볶이 11.9

어묵볶이 7.5

분모자볶이 7.2

**당첨요!**  
 스탬프쿠폰 적립 / 다양한 혜택  
 가래떡 따라 배너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사이드 메뉴

순대(내장)	45
모듬튀김	6.5
순살치킨 (소스 3종 제공)	10.4
셀프주먹밥	40
달걀김치볶음 (소스 2종 제공)	5.0
물벼어묵탕	5.5

## 튀김단품

어묵튀김 6	2.0
잡채단두 4	2.5
김밥이튀김 3	2.5
고구마튀김 3	3.0
아채튀김 3	3.5
김치튀김 3	3.0
수제오징어튀김 3	4.0
고추튀김 3	4.0
가래떡(오차) (소스 2종 제공)	2.0
소떡소떡 (소스 2종 제공)	3.0
꽃난이감자핫도그 4.0	4.0
치즈볼 5	4.5

## 토픽

계란 1	0.7
비엔너 5	1.0
분모자 1줄	1.0
어묵 1	1.5
가래떡 1	1.5
눈꽃치즈 1.5	1.5
모짜렐라치즈 3.0	3.0

## 음료

캔콜라 245ml	1.5
콜라 500ml	2.0
콜라 125L	3.0

## 주류

소주	3.5
맥주	4.0

## NEW 밀키트출시



[별첨 4] 3개년 재무제표

●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